

의안번호	2205390
의 퇴 인	김소희 의원
회 답 일	2025. 2. 21.
추계번호	24A495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안 제5조제4항), ②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안 제8조 및 제9조)를 실시하며, ③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9억 8,800만원(연평균 3억 9,800만원)으로 추계
- 추계된 비용 중 국가재정 부담분은 안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으로 5년간 총 3,000만원(연평균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지방재정 부담분은 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8조·제9조에 따른 비용으로 5년간 총 19억 5,800만원(연평균 3억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종합 영향 조사 (안 제5조제4항)	-	1,212	-	-	-	1,212	242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영향조사 (안 제8조 및 제9조)	-	746	-	-	-	746	14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	6	6	6	6	6	30	6
합 계	6	1,964	6	6	6	1,988	39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개선과 재정투자,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¹⁾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②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및 석탄화력발전산업에 대한 피해와 관련 근로자 현황조사를 포함한 <u>종합적인 영향 조사</u>, ③제6조에 따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종합적인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일부 생략)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 (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①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②창업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③대체산업*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육성, ④대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⑤지역에 특화된 산업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 등을 포함하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대체산업(안 제2조제5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량규정
	안 제1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진흥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²⁾ 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7조 (주민참여)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하여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³⁾ 및 제53조 ⁴⁾ 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 (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예산·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홍보, 포상, 예산·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행정절차법」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⁵⁾ 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9조 (환경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석탄화력 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1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대체 산업 및 기반 시설의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3조 (지원기금의 설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제1항)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제2항)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안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②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③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	의무규정
	안 제15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제1항)	의무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 ⁶⁾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16조 (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0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세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1조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2조 (대체산업의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 관련 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해당 산업을 신설·증설·창업하거나 폐지지역으로 해당 산업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⁷⁾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3조 (인력의 양성 및 확보)	국가는 대체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 대체산업 관련 직업훈련·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대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 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5조 (학교의 설립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학교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인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 조사* 비용을 추계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및 석탄화력발전산업 관련 종합적인 영향 조사
3	안 제6조 (진흥사업)	×	국가가 직접사업 또는 보조사업(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진흥사업을 추진·지원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율 인상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국가사업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없음. 다만, 석탄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참고자료 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안 제1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4	안 제7조 (주민참여)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예산이나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한 운영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추진될 국민참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재원 추가 투입 계획 및 여력에 따라 재정소요가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권역별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 국민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4] 국민참여 및 정책토론 관련 예산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안 제9조 (환경영향조사)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6	안 제11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고용을 장려하고 융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대체산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그 종류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지원 사업의 범위와 정부의 재원 투입 계획 또한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7	안 제13조 (지원기금의 설치) 안 제14조 (기금의 용도) 안 제15조 (기금의 운용·관리)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 하면서 기존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기금 사업의 예산 규모와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3항)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당 지급 비용 추계
8	안 제16조 (교부세 지원의 확대)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하여 교부세를 확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이전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지방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증액 교부 기준 및 금액을 알 수 없고 지방교부세 재원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지방재정 지출의 증감 방향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20조 (조세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개발 촉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조세지원 중 해당 지역에 적용될 감면 항목을 알 수 없고 감면 대상자 수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0	안 제21조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조성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산업기반시설용 상·하수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정비는 총 27건(2025년 국비 예산 총 745억원)이 있음 * [참고자료 6] 환경부 국비 지원 지방 상·하수도 관리·정비 현황
11	안 제22조 (대체산업의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지원)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체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거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만 한정된 지원은 아니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유턴기업에게 입지·설비 투자액 및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7]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 제정안과 유사하게 특정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창업, 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는 사례로는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이 있음 * [참고자료 8] 기회발전특구 기업 이전 등 지원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23조 (인력의 양성 및 확보)	×	정부가 대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 및 위탁 등의 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해외 인력의 유치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대체산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 및 재원 투입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안 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3	안 제25조 (학교의 설립 등 지원)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등을 신설하는 경우 국가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학교 신설 필요성과 부지, 정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4	안 제28조 (권한의 위임)	×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사무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등이 편성되어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 추계에 필요한 위임 대상 사업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영향 조사(안 제5조제4항), ②환경보전계획 수립과 환경영향조사(안 제8조 및 제9조), ③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제1항⁹⁾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하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의 경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¹⁰⁾에 따르면 그 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제4항¹¹⁾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 영향 조사는 폐지지역¹²⁾ 및 석탄화력발전사업¹³⁾, 관련 근로자¹⁴⁾의 현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안 제9조¹⁵⁾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환경오염과

9)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및 산업(석탄화력발전산업)에 대한 피해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근로자(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현황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조사

11)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④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종합적인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화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4)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안 제9조(환경영향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 영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실시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5조제3항¹⁶⁾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이에 대한 설치·운영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안 제5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른 각 영향조사와 안 제8조¹⁷⁾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해당 비용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제4항)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 영향 조사 비용으로는 해당 조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종합 영향 조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인천 옹진군(영흥),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보령시·태안군, 경남 사천시(삼천포)·하동군¹⁸⁾

*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종합 영향 조사의 실시 주기는 5년으로 하되, 2027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1. 산림·식생(植生)·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산업·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안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7) 안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1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안 제2조제2호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외에도 인접 지역을 포함하나, 인접 지역의 경우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종합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됨

- 따라서 종합 영향 조사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가장 최근에 수립된 것은 2023년 3월이므로, 다음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보다 한 해 앞선 2027년에 종합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제8조 및 제9조)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으로는 이를 통합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통합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가정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2~2036)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인천 옹진군(영흥),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보령시·태안군, 경남 사천시(삼천포)·하동군
- *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영향조사의 실시 주기를 알 수 없으나, 안 제5조제4항에 따른 종합 영향 조사의 실시 주기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여 5년으로 하고, 연구용역비는 2027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다른 시·군·구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제15조제3항)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8명, 회의 횟수는 연 3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⁹⁾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정수·구성 및 회의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타 부처 소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회의 빈도를 참고하여 가정²⁰⁾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등

-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영향 조사(안 제5조제4항)

- 종합 영향 조사 실시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에 대한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2027년에만 지방재정으로 12억 1,200만원(연평균 2억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건당 1억 7,300만원 × 7개 지역 = 12억 1,200만원

1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20)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사례

위원회명	위원정수(A+B)	당연직(A)	위촉직(B)	회의 개최실적(회)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10	3	7	2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10	3	7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20	10	10	6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10	6	4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15	7	8	2

주: 회의 개최실적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3.8.

[표 2] 종합 영향 조사 관련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통에너지 산업의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2	259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강원특별자치도	2018	64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남 영광군	2020	197
평균			173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영향 조사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종합 영향 조사 (안 제5조제4항)	-	1,212	-	-	-	1,212	2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안 제8조 및 제9조)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시·군·구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에 대한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2027년에만 지방재정으로 7억 4,600만원(연평균 1억 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건당 1억 700만원 × 7개 지역 = 7억 4,600만원

[표 4]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관련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남원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전북 남원시	2017	43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질조사 및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	강원 삼척시	2017	153
제천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충북 제천시	2018	124
평균			107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영향조사 (안 제8조 및 제9조)	-	746	-	-	-	746	1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3,000만원(연평균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8명) × 회의 횟수(3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600만원

[표 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	6	6	6	6	6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각 영향조사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은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단위: 용량(MW), 발전량(GWh)]

발전소명(지역)	대수	용량	호기	용량	준공	호기	용량	준공	발전량('23)
삼천포화력(경남)	4	2,120	#3	560	'93	#5	500	'97	11,278
			#4	560	'94	#6	500	'98	
영흥화력(인천)	6	5,080	#1	800	'04	#4	870	'08	22,174
			#2	800	'04	#5	870	'14	
			#3	870	'08	#6	870	'14	
여수화력(전남)	2	669	#1	340	'16	#2	329	'11	3,193
보령화력(충남)	6	3,050	#3	550	'93	#6	500	'94	15,990
			#4	500	'93	#7	500	'08	
			#5	500	'93	#8	500	'08	
신보령화력(충남)	2	2,038	#1	1,019	'17	#2	1,019	'17	11,704
태안화력(충남)	10	6,100	#1	500	'95	#6	500	'02	28,163
			#2	500	'95	#7	500	'07	
			#3	500	'97	#8	500	'07	
			#4	500	'97	#9	1,050	'16	
			#5	500	'01	#10	1,050	'17	
하동화력(경남)	8	4,000	#1	500	'97	#5	500	'00	16,889
			#2	500	'97	#6	500	'01	
			#3	500	'98	#7	500	'05	
			#4	500	'99	#8	500	'05	
삼척그린화력(강원)	2	2,044	#1	1,022	'16	#2	1,022	'17	8,867
당진화력(충남)	10	6,040	#1	500	'99	#6	500	'06	27,197
			#2	500	'99	#7	500	'07	
			#3	500	'00	#8	500	'07	
			#4	500	'01	#9	1,020	'16	
			#5	500	'05	#10	1,020	'16	
북평화력(강원)	2	1,190	#1	595	'17	#2	595	'17	6,067
고성(경남)	2	2,080	#1	1,040	'21	#2	1,040	'21	12,247
신서천(충남)	1	1,018	#1	1,018	'21				3,523
강릉안인(강원)	2	2,080	#1	1,040	'22	#2	1,040	'23	9,985
반월열병합*(경기)	1	83	#1	83	'90				368
대구염색열병합*(대구)	1	73	#1	73	'04				0.7
SGC에너지*(전북)	1	114	#1	114	'08				1,962
새만금열병합*(전북)	2	303	#1	152	'15	#2	152	'15	2,376
금호여수열병합*(전남)	2	264	#1	119	'09	#2	145	'16	1,661
여수열병합*(전남)	1	48	#1	48	'10				358
구미열병합*(경북)	1	97	#1	97	'91				535
부산염색열병합*(부산)	1	19	#1	19	'93				16
김천열병합*(경북)	1	59	#1	59	'13				393
전북집단에너지*(전북)	1	19	#1	21	'92				106
상공에너지*(전북)	1	10	#1	10	'12				40
포천그린에너지*(경기)	1	170	#1	170	'18				1,338
동해화력(무)(강원)	2	400	#1	200	'98	#2	200	'99	1,876
삼척화력(강원)	1	1,050	#1	1,050	'24				-

주: *는 비중양급전(14대/1,259.2MW), (무)는 무연탄(2대/400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단위: MW)

연도	전환 계획			
	발전설비	내용	이전 지역	설비용량
2025	태안#1	LNG 전환	구미	500
	태안#2	LNG 전환	여수	500
2026	하동#1	LNG 전환	안동	500
	보령#5	LNG 전환	보령	500
	보령#6	LNG 전환	함안	500
	삼천포#3,4	LNG 전환	(미정)	1,120
2027	하동#2,3	LNG 전환	하동	1,000
	삼천포#5	LNG 전환	(미정)	500
2028	하동#4	LNG 전환	하동	500
	삼천포#6	LNG 전환	(미정)	500
	태안#3	LNG 전환	공주	400
2029	동해#1,2	LNG 전환	미정	400
	당진#1,2	LNG 전환	(호남)	1,000
	태안#4	LNG 전환	(미정)	500
2030	당진#3,4	LNG 전환	용인	1,000
2031	하동#5,6	LNG 전환	용인	1,000
2032	태안#5,6	LNG 전환	용인	1,000
2033	—	—	—	—
2034	영흥#1,2	LNG 전환	(미정)	1,600
2035	—	—	—	—
2036	당진#5,6	LNG 전환	(미정)	1,000

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²¹⁾ 및 첨단산업 전력공급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1) 2025.2.2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자료 미회신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같음함

[참고자료 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번	발전원	발전소	시·도	지원금(2025 예산 기준)
기본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태안발전본부	충남	4,810
	2	석탄(유연탄)	당진화력본부	충남	4,622
	3	석탄(유연탄)	영흥화력본부	인천	3,780
	4	석탄(유연탄)	하동화력본부	경남	2,892
	5	석탄(유연탄)	보령화력본부	충남	2,885
	6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2,204
	7	석탄(유연탄)	신보령화력발전소	충남	1,989
	8	석탄(유연탄)	삼천포화력본부	경남	1,911
	9	석탄(유연탄)	삼척발전본부	강원	1,492
	10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1,658
	11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916
	12	석탄(유연탄)	북평화력발전소	강원	1,024
	13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600
	14	석탄(유연탄)	여수화력발전처	전남	506
	15	석탄(유연탄)	SGC에너지	전북	516
	16	석탄(유연탄)	OCI SE 새만금열병합발전	전북	385
	17	석탄(유연탄)	GS포천그린에너지	경기	208
	18	석탄(유연탄)	구미발전소	경북	96
	19	석탄(유연탄)	반월발전소	경기	66
	20	석탄(유연탄)	김천열병합발전소	경북	57
	21	석탄(유연탄)	부산염색열병합	부산	30
	22	석탄(유연탄)	전북집단에너지	전북	30
	23	석탄(무연탄)	동해화력발전처	강원	504
소계					34,181
특별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5,127
	2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3,240
	3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799
	4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
소계					10,166
합계					44,347

주: 1. 시·도 구분은 발전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²²⁾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함(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기본지원사업(5451-301): 운영중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추정)발전량에 발전원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2025년 예산 기준 총 6개 발전원, 845개 발전소)
- 특별지원사업(5451-302): 건설중 또는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 내 지원(2025년 예산 기준 총 53개 발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4] 국민참여 및 정책토론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5년도 예산
행정안전부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일반회계, 1933-300)	-	(469)
	- 국민참여활성화 추진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홍보자료 제작 등	146
	-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행정제도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우수사례 공유·확산	(105)
	▶ 과제발굴 토론회 및 설명회	권역별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14
	▶ 우수사례 발굴전파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5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정보화)(일반회계, 1132-321)	-	(3,366)
	-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¹⁾ ’ 운영 및 기능개선 · 국민신문고 내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공공의제에 대한 국민, 공공기관 및 전문가 간 의견 교류	2,877

주: 1)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정책토론을 국민신문고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1.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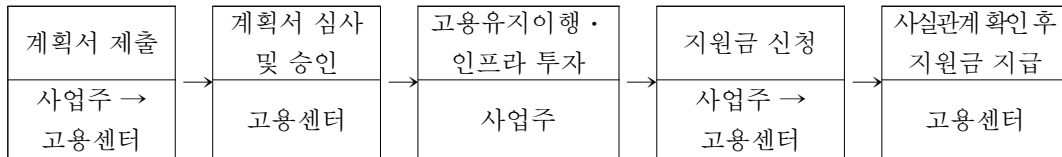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요건)** 최소 임차금액 100만원 이상,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예산)** ('24년) 2,500백만원 → ('25년) 750백만원('24년 승인 기업 계속지원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한도 사업주 투자의 50%, 1년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사업주가 인프라 투자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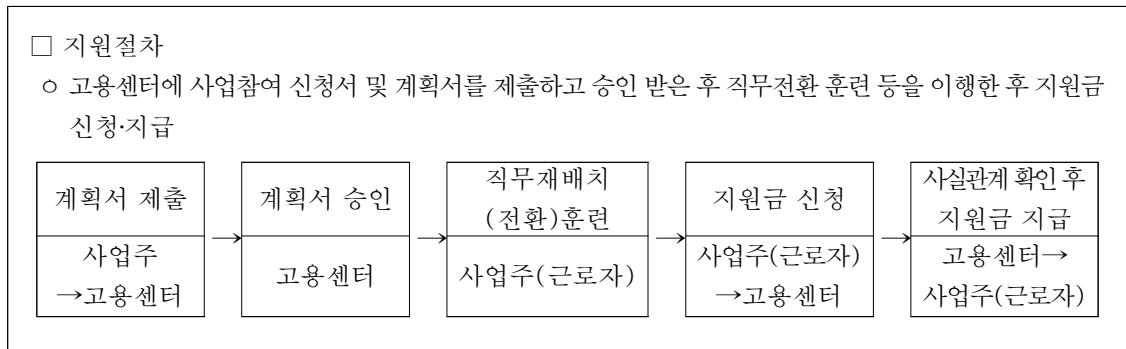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해 재배치(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지원요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계획 수립 후 직무를 변경하여 재배치 예정인 근로자에게 직무훈련을 제공하거나 이·전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
- **(예산)** ('24년) 3,742백만원 → ('25년) 3,742백만원
 - 훈련비: 1,862백만원('25년 신규 660명×2.1백만원+'24년 계속 476백만원)
 - 훈련장려금: 1,680백만원(560명×2백만원×1.5개월)
 - 운영비: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훈련비용 실비지원(인당 최대 300만원 내 12개월 한도), 사업주 훈련장려금(월 최대 200만원(인당 1일 10만원), 총 600만원 내 12개월 한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참고자료 6] 환경부 국비 지원 지방 상·하수도 관리·정비 현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현황(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명	사업계획	총사업비			2025년 예산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강원	동해	동해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부곡, 이원 중블록 관로 28.0km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각 1식	32,243	21,053	11,190	834	500	334
강원	동해	이원정수장 개량	이원정수장(20,000 m³/일) 통합재건설	75,610	37,805	37,805	13,502	6,751	6,751
강원	동해	동해시 노후상수 관망 정비 (사문, 쇠운)	사문, 쇠운 중블록 관로 73.4km 정비	43,481	21,741	21,740	4,348	2,174	2,174
충남	보령	성주정수장 개량	성주정수장 (900m³/일) 개량	9,400	4,700	4,700	3,648	1,824	1,824
충남	보령	보령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웅천, 청라 중블록 관로 19.9km 정비	15,000	7,500	7,500	1,500	750	750
충남	당진	함덕정수장 개량	함덕정수장 (2,400m³/일) 재건설	25,208	12,604	12,604	4,286	2,143	2,143

세부사업명: 노후상수도정비(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1-306)

보조율: 50~70%

자료: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 현황(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명	사업계획	총사업비			2025년 예산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인천	옹진	2025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옹진군 관로(12.55km), 물탱크(2개소), 관정 (2개소) 설치 등	5,824	4,077	1,747	5,824	4,077	1,747
인천	옹진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백령도해수담수화시설 (2,200m³/일) 신설	37,099	25,969	11,130	4,286	3,000	1,286
인천	옹진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구축공사	북도면 급배수관로 (36.6km)신설	24,482	17,137	7,345	17,011	11,907	5,104
충남	보령	보령지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보령지구 해저 (12.1km)·육상관로 (10.6km) 신설 등	45,000	31,500	13,500	714	500	214

세부사업-내역사업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도서지역식수원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1-301)

보조율: 70%

자료: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황(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

(단위: 백만원)

구분	광역시도	기초 (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2025년 예산(국비)
하수관로 정비	인천	옹진군	영흥 하수관로정비(확충)	하수관로 L=11.43km	15,716	2,434
하수관로 정비	인천	옹진군	백령 진촌 우오수분리 사업	하수관로 L=13.3km, 맨홀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424개소 등	11,170	828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관로개량 5.2km, 빗물펌프장 3개소	19,333	300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 사업(송정C)	관로개량 3.6km	13,403	500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동해하수관로정비사업 (송정,부곡,북평분구)	하수관로 신설 38.4km	49,560	16,646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목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1단계)	하수관로 신설 44.4km	47,178	2,853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동해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목호1단계)	하수관로 보수 8.8km	7,865	400
하수관로 정비	충남	당진시	하수도중점관리지역(당진배수 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하수관로 신설 3.1km, 빗물펌프장 400톤/분	34,122	500
하수관로 정비	충남	당진시	고대 부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관로 신설 8.0km	8,604	1,999
하수관로 정비	충남	보령시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	하수관로 신설 37km	38,073	3,031
하수관로 정비	충남	보령시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22.5km	43,514	500
하수관로 정비	충남	태안군	백사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신설 0.5km	1,034	312
하수관로 정비	충남	태안군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하수관로 정비 5.9km	9,955	1,998
하수관로 정비	경남	사천시	삼천포배수구역(동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L=6.865km	13,822	1,942
하수관로 정비	경남	사천시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차집관로(압송관) 설치 L=3.58km	10,500	1,944
하수관로 정비 BTL	충남	당진시	당진시 하수관거 정비 BTL사 업 시설임대료 지급	하수관로 52.975km	76,130	2,515
하수관로 정비 BTL	충남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지급	오수관로 신설 39.6km, 우수관로 신설 6.4km	69,464	2,160

세부사업명: 하수관로정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2-312),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2-750)

보조율: 60~70%

자료: 환경부

[참고자료 7]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5년도 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투자유치기반조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01-302)	-	(364,246)
	- 국내복귀투자보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유턴 기업에게 입지·설비 투자액 및 이전비용 등을 지원 * 국비 보조율은 11~44% 내에서 입지별로 상이	104,5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8] 기회발전특구 기업 이전 등 지원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재산세	·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6.20.) “지방시대 신(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7.25.)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